

---

# 자율안전확인신고 수행계획서

---

2022.

**SU**지주

SU holdings Co., Ltd.

안전한 일터! 건강한 미래!

**SU**세이프어스

## 【 목 차 】

<b>1. 자율안전확인 대상품</b> -----	<b>1</b>
I. 자율안전확인 대상품의 개요-----	2
<b>2.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목적</b> -----	<b>3</b>
I.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4
II. 법적근거-----	4
III. 벌칙 및 과태료-----	4
<b>3.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및 범위</b> -----	<b>5</b>
I.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6
II. 대상품별 적용범위-----	7
<b>4.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흐름 및 세부계획</b> -----	<b>10</b>
I.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흐름도-----	11
II. 세부계획-----	11
<b>5. 첨부서류</b> -----	<b>13</b>
[첨부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14
[첨부2]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5

---

# 1.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

## I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의 개요

순번	대상품(중)	대상품(소)	용량단위	구분(형식)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연삭기	kW	
		연마기	kW	
2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Axis	
3	혼합기	혼합기	kW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파쇄기	kg/h	
		분쇄기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기	kW	
		절단기	kW	
		혼합기	kW	
		제면기	kW	
6	컨베이어	컨베이어	kg/h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Ton	
8	공작기계	선반	kW	
		드릴기	kW	
		평삭기	kW	
		형삭기	kW	
		밀링기	kW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등근톱	kW	
		대패	kW	
		루타기	kW	
		띠톱	kW	
		모떼기 기계	kW	
10	인쇄기	인쇄기	도	

---

## 2.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목적

---

## I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제도

## II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 신고) ~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 III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벌칙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171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자율안전확인대상별)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	250	500
법 제1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기준에 맞는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8호	30	150	3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

## 3.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및 범위

---

I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구 분	대 상 품	
위험기계·기구	(10종)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⑧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⑨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동근톱, 대패, 라우터, 띠틈,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⑩인쇄기
방호장치	(8종)	①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롤러기 급정지장치 ④연삭기 덮개 ⑤목재 가공용 동근톱 반발 예방장치 및 날 접촉 방지장치 ⑥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⑧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
보호구	(3종)	①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②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③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 II

## 대상품별 적용범위

## ◎ 위험기계·기구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플레이터(엑츠크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6	컨베이어	<p>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p> <p>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p> <p>나. 롤러 컨베이어</p> <p>다. 트롤리 컨베이어</p> <p>라. 버킷 컨베이어</p> <p>마. 나사 컨베이어</p>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p>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p>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p>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p> <p>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p> <p>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공작물을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p> <p>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수평 또는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을 절삭하는 공작기계</p> <p>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p>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동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p>가. 동근톱기계: 고정된 동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p> <p>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패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p> <p>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p> <p>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p> <p>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불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p>
10	인쇄기	<p>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p>

## ◎ 방호장치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2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7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력감지형 안전매트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선반지주 나. 단관비계용 강관 다. 고정형 받침철물 라.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마. 방호선반 바.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사. 측벽용 브래킷

## ◎ 보호구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2	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3	보안면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

## 4.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흐름 및 세부계획

---

I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흐름도



II

## 세부계획

### 1 현장미팅

- ▶ 처리기한 : 1일
- ▶ 내용 : 현장 필요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 2 위험성평가

- ▶ 처리기한 : 1일
- ▶ 내용 : 신고 대상품 형식별 위험성 평가 실시

### 3 전기안전시험

- ▶ 처리기한 : 1일
- ▶ 내용 : 내전압시험, 절연저항시험, 접지연속성시험, 잔류전압시험 실시

#### ④ 서류작성 및 신고서 제출

- ▶ 처리기한 : 7일
- ▶ 내용 :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서류작성 대행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고서 제출

#### ⑤ 신고내용 확인

- ▶ 처리기한 : 15일
- ▶ 신고수리기관
  - 위험기계·기구 :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⑥ 자율안전확인 증명서 교부

- ▶ 내용 :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교부, KCS스티커 발급은 별도(자체제작)

#### ⑦ 참고사항

- ▶ 내용 : ① ~ ④ 항목의 처리기한은 신고 대상품의 형식 및 종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서 제출 시 신고 대상품의 방호장치 설치상태가 부적절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품에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서류작성 일체와 안전보건공단에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 교부까지의 용역임.

---

## 5. 첨부서류

---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형식(규격)

용량(등급)

제조사 · 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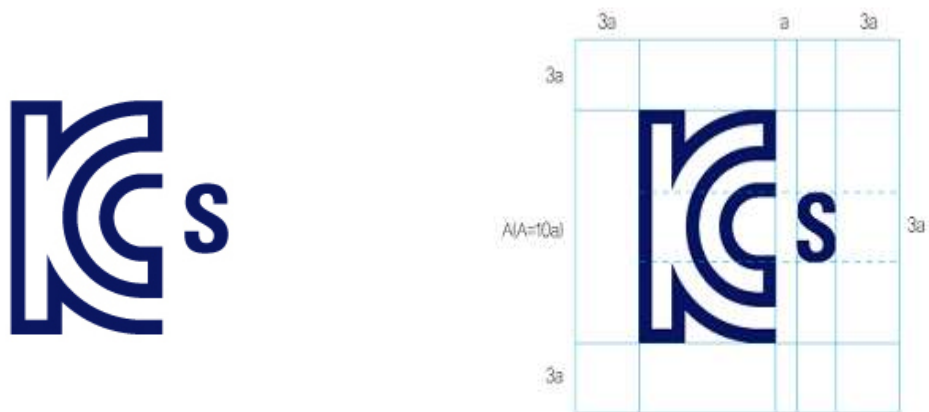


[첨부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0.1.16.]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